

1. 머리말

최근 정부는 IMF체제를 조기에 극복하고, 국가사회의 전반에 걸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2의 전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각분야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

할 때 50%이상의 규제폐지는 매우 혁명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해 전파를 이용한 무선통신은 주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이용하고 있었을 뿐 일반인들은 아마



정보통신부
전파기획과 김태의 서기관

전파방송분야 규제개혁 추진

다. 민간부문의 구조조정과 함께 정부부문도 민간의 자율성을 증대하여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의 개편과 함께 지금까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규제의 50%이상을 금년중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현재 해당 법령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그 일환으로 전파방송분야도 50%이상의 규제를 폐지하고,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많은데 전파의 기본개념이 관리 및 효율적 이용측면에 중점을 두어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추어무선통신을 제외하고는 이용이 미미하였으며, 규제의 초점도 그 이용을 억제하는데 두고 있었으나, 1983년 이동전화가 도입되어 그 이용이 확대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전파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규제제도도 많은 개선이 추진되어 왔다.

무선통신은 전파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을 하므로 그 기술적 특성을 달리함에 따라 도달범위가 크게 달라지고, 다른 사람의 통신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서로의 통신

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필요로 하며,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규제가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초점은 모든 사람들이 전파를 보다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신사업자나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파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있다.

2. 규제개혁의 내용

전파방송분야의 규제개혁은 전파법령의 모든 분야에 걸쳐 추진되고 있는데 전파관련 규제의 틀이 무선국허가와 관련된 사항, 무선기기의 검·인증과 관련된 사항, 기타 무선국의 운용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무선국 허가제도관련 규제의 개혁

무선국의 허가와 관련하여 현재에는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3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법인의 경우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외국인의 지분보유와는 관계없이 무선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인은 우리나라 아마추어무선 기사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아마추어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우리나라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아마추어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히, 국내에 거주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동안 무선국 개설을 하지 못했던 학교들도 아마추어무선국의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이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상호협정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에게 아마추어무선국의 개설을 허용하는데 비해 국내에 일시체류하는 외국의 아마추어자격 보유자에게도 일정한 범위에서 아마추어무선국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아마추어들의 편의증진으로 국내 방

문을 활성화하여 국내 관광수입의 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무선기기의 검·인증 등과 관련된 규제의 개혁

또한 현재 법인의 인수·합병시에만 허가받은 무선국의 승계를 허용하던 것을 법인 사업의 일부가 인수·합병되는 경우에도 해당 무선국에 대한 허가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근의 IMF 체제하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기업간 M&A는 물론 일부 사업들에 대한 M&A도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무선국에 주파수 축정장치 등의 계기, 국제표준시에 맞춘 시계, 기타 무선설비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예비품을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하고, 무선국 허가나 검사시 이를 점검하고 있으나 이번 규제개혁에서 이들에 대한 비치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허가관련 사항이 간소화되어 무선국 시설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측된다.

무선국 검사제도에 있어서도 현재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이동중계국, 육상국, 이동국의 정기검사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여 검사회수 감소에 따른 무선국 시설자의 편의증진 및 검사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무선기기 검·인증과 관련하여 현재는 개인용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에 대해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기는 1대, 외국의 기술자가 국내 산업체 등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 기간내에 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반입하는 기기는 5대이하, 전시용 또는 제품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수입하는 5대이하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에 대해서만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용기기의 원활한 유지보수와 기기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미 전자파적합등록이 된 대형 컴퓨터의 유지보수용으로 수입하는 부분품과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고 수출한 컴퓨터의 내장 구

성품은 등록대상기기에서 제외하였으며, 외국에서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을 받은 기기는 국내에서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수입할 수 있도록 무선설비 형식검정의 상호인정범위를 확대함으



로써 각국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 무역장벽을 해소하여 수출촉진으로 관련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그동안 제조업체가 형식검정·형식등록 또는 전자파적합등록에 합격한 기기에 대해 생산기기 10대당 1대를 자체 측정설비를 구비하거나 지정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주파수, 출력 등을 측정하고 관련자료를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품질보증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게 한 품질보증업무에 대해서는 1998. 7월에 생산기기의 수량에 관계 없이 품질보증관련 기록만을 유지하도록 완화한데 이어 이번에 품질보증업무 자체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제조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휴대형 무선기기에 대해 무선국 허가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2년 도입한 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는 1998. 7월에 허가의 제 대상인 이동전화 등 공중통신용 단말기를 기술기준확인증

명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조업체가 약 150억원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번에 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 자체를 폐지하면서 기존의 대상기기인 휴대형 무선기기는 간이한 허가절차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체의 비용절감과 함께 제품 출하기간도 2~3일 정도 단축할 수 있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무선통신시장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외에도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할 무선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인명안전과 관련된 무선국을 제외하고는 대폭 완화하여 무선국시설자들이 무선종사자를 배치로 인한 인력확보 부담을 크게 경감하였으며, 민영방송국들이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송출 시설을 구비하여 비상시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폐지하여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과 인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무선국 운용 등과 관련된 규제의 개혁

기타 무선국의 운용 등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허가받은 무선설비의 임대, 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을 승인신청할 경우 승인신청서외에 시설을 설치할 대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등 10종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던 것을 합의서 및 공동사용계약서 2종의 서류만 첨부토록 함으로써 행정절차 및 서류 간소화로 무선설비 이용자의 편의를 크게 증진하였으며, 하위급 무선종사자의 종사범위를 확대, 완화하여 무선종사자들에게는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채용 가능한 인력의 범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고층건축물들의 증가로 건물주변 주민들의 TV 수신이 장해를 받는 경우가 자주 있어 당사자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는 절차를 전파법에 두어 방송수신의 장해를 받고 있는 주민이 건축물 허가기관의 장에게 장해발생 신고를 하면 허가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장해원인, 장해범위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고 이에 따라 건축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장해 신고기간을 건축물이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어 이 기간이 다수의 국

민을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제기됨에 따라 신고기간을 2년이내로 연장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전파를 이용함에 따라 부과되는 전파사용료의 경우 현재 공중통신용 단말기에는 고정액, 기타 무선국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하나의 산정식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는 것을 통신사업자용 무선국의 급격한 증가추세, 광대역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상용화 추진 등에 따른 과도한 부담 증가를 감안하고, IMF체제하에서 통신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용 무선국에 대해서는 무선설비의 증가에 따라 전파사용료 증가율도 체증하는 현재의 산정식 대신 무선설비의 증가시 전파사용료 증가율은 체감하도록 한 새로운 산정식을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을 조기 예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정액 부과대상에 공중통신용 단말기외에 이동중에 사용하는 단말기 형태의 무선국도 포함시키고, 전파사용료도 평균 40% 인하하여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단을 대폭 경감하였다.

이러한 전파사용료 제도의 개

선으로 통신사업자는 연간 약 520억원, 이동통신가입자는 연간 약 1,000억원의 부담을 경감하게 되어 전파이용의 활성화 및 통신사업자의 투자촉진을 유도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로 인한 고용촉진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느끼는 규제의 강도는 제도적 측면보다는 제도수행에 있어 발생하는 관행적인 규제가 보다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규제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관행적 규제의 발생소지를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변화에 대응한 규제

3. 맷음말

현재 우리나라의 전파관련 규제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상당 부분 폐지내지 완화되어 지금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규제수준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부 규제에 있어서는 선진국보다 완화된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의 전파관련 기술은 과거 이용억제로 인해 일부 통신서비스용을 제외하고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이어서 규제도 내용적 측면보다는 절차적 측면에 중점을 둔 경향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전파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 앞으로는 규제제도에 있어서도 절차적 규제는 대폭 완화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통신이용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기준 및 이용조건 등 내용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향후 모든 전파관련 규제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법제화하고, 전파이용환경 변화 및 기술발전에 맞추어 규제제도도 정비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증진은 물론 관련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